

검 토 보고 서

2021. 3. 4. (목)

검 토 안 건	발 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조광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제안자 : 채우진 의원 외 5인
- 제안일 : 2021. 2. 26.
- 회부일 : 2021. 2. 26. (의안번호 : 21-25)

2. 제안이유

「청년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용어의 재정의, 청년 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기본이념 내용 구체화(안 제1조 ~ 제2조)
- 나. 용어의 정의 수정 및 추가(안 제3조)
- 다. 청년네트워크 명칭 변경(안 제6조 및 제11조)
- 라.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안 제7조 ~ 제9조)
- 마. 청년단체 구체화(안 제21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기간: '21.2.25. ~ '21.3.1.)
- 규제사항 유무 :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 평가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발전의 수립, 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 ---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 설>

4.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5. -----

----- 청년
발전-----
-----.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등) ① (생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략)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 사. (생략)

3. (생략)

4. 청년네트워크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생략)

③ (생략)

<신설>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분야별 주요 정책

가. ~ 사.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청년정책네트워크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신 설>

3. 마포구 청년정책네트워크에
서 제안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
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
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담당 국장과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
촉 위원은 청년을 10명 이상 포
함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
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1. 경제, 주택, 복지, 문화, 교육
등 청년정책 업무 관련 부서
의 장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하거나 관
련 경험이 풍부한 청년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명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원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신 설>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
원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
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
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 과
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
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제7조 (생 략)

제8조(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 ① 구청장은 청년들의 구 정 참여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하 여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공개 모집 후 성별을 고려하여 청년네트워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청년네트워크는 위원장 1명과 남·여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④ (생 략)

⑤ 청년네트워크는 청년 의견 수렴과 청년 문제 및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의 정책

정한다.

제10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11조(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 ① -----

-- 청년정책네트워크를 -----

----- 청년정책네트
워크 위원-----.

1. ~ 3. (현행과 같음)

② 청년정책네트워크-----

----- 30명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청년정책네트워크-----

-----.

⑥ ----- 청년정책네트워크-----

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u>청년네트워크</u>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 ⑧ <u>청년네트워크</u>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생략) <u>제9조 ~ 제17조</u> (생략) <u>제18조</u>(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u>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u>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u>제19조 · 제20조</u> (생략)	----- ---. ⑦ <u>청년정책네트워크</u>----- ----- ---. ⑧ <u>청년정책네트워크</u> ----- ----- -----. ⑨ (현행과 같음) <u>제12조 ~ 제20조</u> (현행 제9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 <u>제21조</u>(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 <u>청년정책의 수립과 시행 및 청년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계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청년단체, 동아리</u> ----- -----. ② (현행과 같음) <u>제22조 · 제23조</u> (현행 제19조 및 제20조와 같음)
---	--

5. 검토의견

- 「청년기본법」은 2020.2.4. 법률 제16956호로 제정되어 2020.8.5.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발전의 근간인 청년은 최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청년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를 규정하고,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하며, 청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통해 청년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를 2018.5.3.제정하여 2019.1.1.부터 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새로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 내용 구체화 함.
 - 안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수정 및 추가함.
 -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성·운영 등을 규정함.
 - 안 제21조에서는 지원 청년 단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청년 기본 조례를 상위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특히 상설기구인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청년위원이 10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청년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반면에 우리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상반되는 사안의 경우 청년의 의도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되며 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 고 자 료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2. 관계법령

[자료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청년정책위원회 신설 및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수 증가(10명 증)로 인한 위원회 운영 비용 증가

[관련 조문]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 ⑧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분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
 -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수당 연간 소요분('21년 기편성 예산 활용)
 - 위원 12명(위촉직) × 70,000원 × 5회 = 4,200천원
 - 청년정책네트워크 수당 연간 소요분('21년 기편성 예산 활용)
 - 위원 30명 × 20,000원 × 20회 = 12,000천원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교육국 아동청년과 전보아
연 락 처	02-3153-8982

[자료2] 관계법령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